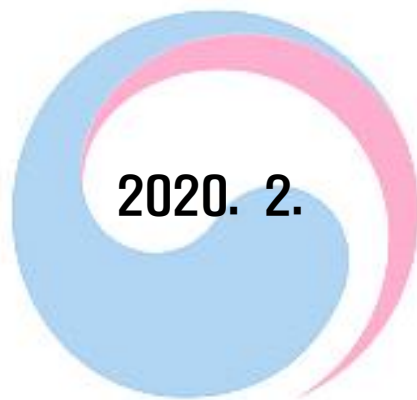


**2020년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계약특수조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특허청”이 디자인 전문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 조사·분석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특허청”이 제공한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도 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수행계획서’의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 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디자인 조사·분석 의뢰) ① “특허청”은 계약물량을 사업수행기간 동안 적정하게 배분하여 지정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디자인 전문조사와 일반 조사 분석을 의뢰한다.

② 조사의뢰 절차나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디자인 조사·분석의 범위 및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2020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허청”이 의뢰한 디자인을 조사·분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조사 및 납품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지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 의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특허청”이 지정하는 날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납품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특허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납품건수와 목록을 지정하여 예정된 납품일 이내에도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내용이 난해하여 조사·분석에 시간이 요구되거나 의뢰물량의 급증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기간은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납품) ① 디자인 조사·분석이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디자인 조사·분석 결과 납품내역서」 및 「디자인 조사·분석 보고서(심사메모)」를 “특허청” 이 지정하는 형식의 데이터로 납품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디자인 조사·분석 보고서」의 경우에는 조사·분석 의뢰 출원디자인의 서지사항, 검색결과(참증번호), 유사디자인에 대한 판단, 검토 의견 초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검수 및 검사) ① “특허청”은 납품된 보고서를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 검수(물량)를 완료하고, 심사착수 후 2차 검사(품질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보류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청”은 검수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디자인 전문조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구두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검사결과에의 반영) 검사결과 조사·분석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 조사·분석) 및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관에 대한 심사품질평가 결과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부실건수에 해당하는 만큼 다음 연도 재계약 전까지 추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검사결과에 대해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용역대금 지급) “특허청”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용역비”라 함)로서 계약금 총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특허청”은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계약금 총액의 100분의 7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착수 시점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대금은 “특허청”의 1차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금집행에 있어, “특허청”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선금이행을 담보하는 증권을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선금의 사용이나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에 따른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제5조의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지체납품 건당 지체일수 1일에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0조(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에 따른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류 사유 등의 발생일로부터 그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5조 제2항에 따라 납품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른 납품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품질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특허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사원의 디자인 조사·분석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특허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허청 고시(제2020-3호)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원 연수 교육 결과를 교육이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 준수 및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결과를 “특허청”의 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 이외의 타인에게 전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허청”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임원 및 조사인력에 대하여 특허청 고시(제2020-3호)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로 조사원을 본 업무에 투입할 경우에도 별지 서약서를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신규 직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 정책과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결과 신규 직원이 용역사업과 관련된 비밀 준수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 (공무원 의제 및 손해의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청”과 같이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동의 없이 사업 계획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 또는 명백한 하자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용역대금 지급시에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금 지급 후에 감액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기일까지 “특허청”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특허청”과 “계약상대자”의 서로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계약기간 및 본 계약준용) ① 계약기간은 2020.1.1.로부터 2020.12.31.까

지로 한다.

② 익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2020년도 계약을 준용하여 2021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2021년도 사업 계약결과 확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 별지 서식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특허청”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특허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특허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조사·분석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국내 디자인 출원서 서지사항의 개인정보 열람
2. 기타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열람·관리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특허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특허청”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특허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특허청”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특 허 청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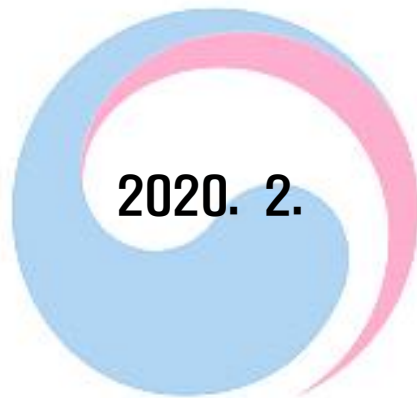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20년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계약특수조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특허청(이하 “특허청”이라 한다)이 디자인 전문 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특허청”이 제공한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수행계획서’의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디자인 물품분류 의뢰) ① “특허청”은 연간 계약물량을 월별로 안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한다.

② 분류의뢰 횟수와 월별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디자인 물품분류의 범위 및 내용) “계약상대자”는 ‘2020년 디자인 물품분류 사업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허청”이 의뢰한 디자인 물품을 분류해야 한다.

제5조 (분류 및 납품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개수와 목록을 지정하여 예정한 납품일 이내에도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일정은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특허청”과 협의하는 등 시간이 요구되거나 의뢰물량의 급증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기간은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납품) ① 디자인 물품분류가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디자인 물품분류 결과물”을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 형식과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검수) ① “특허청”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목록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자체 기준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디자인 물품분류 결과물”을 검사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검수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 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재분류 및 추가분류 의뢰)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의 디자인 물품 분류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분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 물품분류에 대한 “특허청”의 검사결과 “오분류”로 평가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재계약 전까지 추가 분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오분류”의 판단에 앞서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용역대금 지급) “특허청”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용역비”라 함)로서 계약금 총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특허청”은 선금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계약금 총액의 100분의 7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착수 시점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대금은 제7조에 따른 “특허청”의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금집행에 있어, “특허청”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선금이행을 담보

하는 증권을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선금의 사용이나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에 따른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제5조의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지체납품 건당 지체일수 1일에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납품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른 납품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류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특허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분류요원의 디자인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허청”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 준수 및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결과를 “특허청”의 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 이외의 타인에게 전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허청”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 의제 및 손해의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청”과 같이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동의 없이 사업 계획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 또는 명백한 하자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용역대금 지급시에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금 지급 후에 감액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기일까지 “특허청”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특허청”과 “계약상대자”의 서로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계약기간 및 본 계약준용) ① 계약기간은 2020. 1. 1.로부터 2020.12.31.까지로 한다.

② 익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2020년도 계약을 준용하여 2021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2021년도 사업 계약결과 확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 별지 서식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특허청”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특허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특허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물품분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³⁾

1. 국내 디자인 출원서 서지사항의 개인정보 열람
2. 기타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열람·관리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특허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특허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3)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특허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특허청”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특 허 청 장

(인)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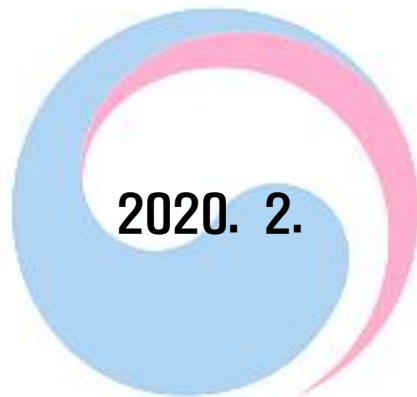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20년도 명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계약특수조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특허청이 디자인 전문기관(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특허청”이 제공한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수행계획서’의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연간 계약물량을 월별로 안배하여 계획에 맞게 착수한다.

② 월별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계약상대자”는 ‘2020년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허청”이 의뢰한 심사자료를 정비 및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시기 및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월별로 나누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허청”의 요구에 따라 납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건수와 목록을 지정하여 예정한 납품일 이내에도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일정은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특허청”은 효율적인 심사자료 정비를 위하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을 거쳐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비된 공지디자인 심사자료는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CD(DVD) 또는 기타 저장 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납품한다.

제6조 (검수 및 검사) ① “특허청”은 납품 결과물을 해당 심사관에게 제공하여 그 정비 및 구축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검수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 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검사결과에의 반영)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의 정비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및 반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결과물의 판단을 하기 전에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8조 (용역대금 지급) “특허청”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용역비”라 함)로서 계약금총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특허청”은 선금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계약금 총액의 100분의 7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착수 시점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대금은 제6조에 따른 “특허청”의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금집행에 있어, “특허청”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선금이행을 담보하는 증권을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선금의 사용이나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에 따른다.

제9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제5조의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지체납품 건당 지체일수 1일에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특허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비 인력에 대해 심사자료 정비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허청”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비밀 준수 및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결과를 “특허청”의 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디자인 정보에 관하여 직무 이외의 타인에게 전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허청”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무원 의제 및 손해의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청”과 같이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동의 없이 사업 계획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 또는 명백한 하자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용역대금 지급시에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금 지급 후에 감액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기일까지 “특허청”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특허청”과 “계약상대자”의 서로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계약기간 및 본 계약준용) ① 계약기간은 2020. 1. 1.로부터 2020.12.31.까지로 한다.

② 익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2020년도 계약을 준용하여 2021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2021년도 사업 계약결과 확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 별지 서식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특허청”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특허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특허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물품분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⁵⁾

1. 국내 디자인 출원서 서지사항의 개인정보 열람
2. 기타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열람·관리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특허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특허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5)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6)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특허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특허청”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특 허 청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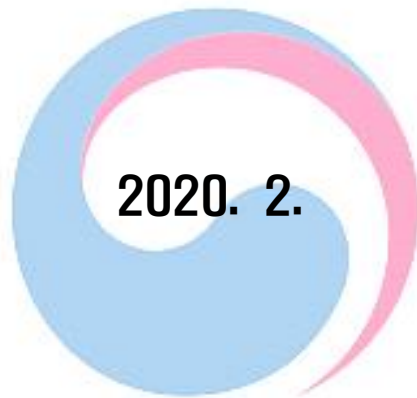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20년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계약특수조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특허청이 디자인 전문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특허청”이 제공한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수행계획서’의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의뢰) ① “특허청”은 연간 계약물량을 월별로 안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한다.

②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의뢰 횟수와 월별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의 범위 및 내용) “계약상대자”는 ‘2020년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허청”이 의뢰한 출원서 번역 및 영문지정물품을 분류해야 한다.

제5조 (분류 및 납품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출원서 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개수와 목록을 지정하여 예정한 납품일 이내에도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일정은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특허청”과 협의하는 등 시간이 요구되거나 의뢰물량의 급증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기간은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납품) ①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가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결과물”을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 형식과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검수) ① “특허청”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목록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자체 기준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결과물”을 검사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검수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 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재분류 및 추가분류 의뢰)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의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에 대한 “특허청”의 검사결과 “오번역”, “오분류”로 평가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재계약 전까지 추가 분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오번역”, “오분류”의 판단에 앞서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용역대금 지급) “특허청”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용역비”라 함)로서 계약금총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특허청”은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계약금 총액의 100분의 7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착수 시점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대금은 제7조에 따른 “특허청”의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금집행에 있어, “특허청”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선금이행을 담보하는 증권을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선금의 사용이나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에 따른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제5조의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지체납품 건당 지체일수 1일에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납품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른 납품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특허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 요원의 출원서번역 및 영문지정물품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허청”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 준수 및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결과를 “특허청”의 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 이외의 타인에게 전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허청”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 의제 및 손해의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청”과 같이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동의 없이 사업 계획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 또는 명백한 하자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용역대금 지급시에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금 지급 후에 감액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기일까지 “특허청”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특허청”과 “계약상대자”의 서로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계약기간 및 본 계약준용) ① 계약기간은 2020. 1. 1.로부터 2020.12.31.까지로 한다.
② 익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2020년도 계약을 준용하여 2021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2021년도 사업 계약결과 확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 별지 서식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특허청”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특허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특허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물품분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⁷⁾

1. 국내 디자인 출원서 서지사항의 개인정보 열람
2. 기타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열람·관리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특허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특허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7)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8)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특허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특허청”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특 허 청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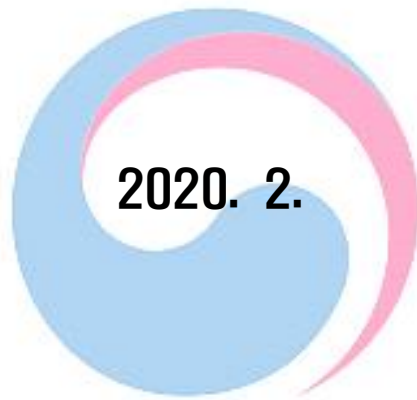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20년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계약특수조건**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특허청이 디자인 전문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특허청”이 제공한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수행계획서’의 제반사항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020년도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년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020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의뢰) ① “특허청”은 연간 계약물량을 안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한다.

② 의뢰 횟수와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2020년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허청”이 의뢰한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참증자료들을 그룹화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납품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사업의 납품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지정한 기준에 따라, “특허청”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납품건수와 목록을 지정하여 예정된 납품일 이내에도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그룹화에 시간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건에 대하여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일정은 “특허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납품) ①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가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결과물”을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 형식과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검수 및 검사) ① “특허청”은 납품된 보고서를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목록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자체 기준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결과물”을 검사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검수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 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검사결과에의 반영) 검사결과 디자인 참증자료 그룹화 결과물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부실건수에 해당하는 만큼 다음 연도 재계약 전까지 추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룹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검사결과에 대해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용역대금 지급) “특허청”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용역비”라 함)로서 계약금 총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① “특허청”은 선금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계약금 총액의 100분의 7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착수 시점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② 용역대금은 제7조에 따른 “특허청”의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선금집행에 있어, “특허청”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선금이행을 담보하는 증권을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선금의 사용이나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에 따른다.

제10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제5조의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지체납품 건당 지체일수 1일에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품질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특허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룹화 요원의 디자인 그룹화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특허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 준수 및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결과를 “특허청”의 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 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 이외의 타인에게 전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허청”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 의제 및 손해의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청”과 같이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모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의 동의 없이 사업 계획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 또는 명백한 하자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용역대금 지급시에 감액하여 지급하며, 대금 지급 후에 감액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허청”이 정한 기일까지 “특허청”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특허청”과 “계약상대자”의 서로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계약기간 및 본 계약준용) ① 계약기간은 2020. 1. 1.로부터 2020.12.31.까지로 한다.

② 익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2020년도 계약을 준용하여 2021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2021년도 사업 계약결과 확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 별지 서식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특허청”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특허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특허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물품분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9)

1. 국내 디자인 출원서 서지사항의 개인정보 열람
2. 기타 사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열람·관리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특허청”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특허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9)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¹⁰⁾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특허청”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특허청”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특 허 청 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